

1. 개정이유

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,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,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74호, 2024. 2. 13. 공포, 2025. 2. 14. 시행)됨에 따라,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 서식, 조치명령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, 개정 법률 취지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소방청장등은 조치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통보하고, 관리주체가 재해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 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만료 5일 전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, 기간 연장을 신청받은 행정기관은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(안 제10조의2)
- 나.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,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등 서식을 일부 변경함
- 다. 개정 법률에서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,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

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해당 부분 삭제하여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수용인원) ①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항에 따른 사용형태별 재실자 밀도는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별표1의2 제1호나목의 사용형태별 재실자 밀도를 말한다.

② 영 제2조제3항단서에 따른 문화·집회용도 중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과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의 수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.

1.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은 좌석길이를 45.5센티미터로 나눈 값
2.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은 휠체어 공간 수에 고정좌석 수를 더한 값

제2장에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3(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신청서)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

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다.

제2조의 제목 “(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및 자격)”을 “(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)”로 하고,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)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(이하 “초고층 건축물등”이라 한다)의 유지·관리 및 점검, 보수 등에 관한 사항
2. 방법, 보안, 테러 대비·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3.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
4.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제3조의 제목 “(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)”을 “(총괄재난관리자의 등록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항”을 “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4조의2제3항”으로, “지정한”을 “선임한”으로, “지정 등록”을 “선임 등록”으로,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“시·군·구본부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·군·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1호”를 “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1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

“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2호”를 “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3호”를 “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3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5호”를 “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5호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정 등록 신청”을 “선임 등록 신청”으로, “시·군·구본부장은 지정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”을 “시·군·구청장은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4조의2제1항”으로, “지정 등록증”을 “선임 등록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신청을 받은 시·군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[총괄재난관리자가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1호(건축사는 제외한다),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나목1)(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)·2)·3)에 해당하는 경우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·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]을 확인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⑤ 시·군·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받

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에 관한 내용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(해양경찰청·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는 제외하며, 이하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“긴급구조기관”이라 한다)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정된”을 “선임된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시·도본부장 또는 시·군·구본부장”을 각각 “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·도본부장 또는 시·군·구본부장으로부터”를 “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장으로부터”로, “시·도본부장 또는 시·군·구본부장에게”를 “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장에게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시·군·구본부장에게”를 “시·군·구청장에게”로, “시·군·구본부장은”을 “시·군·구청장은”으로, “시·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시·도본부장은”을 “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”으로, “보고하여야 한다”를 “제출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방화관리상”을 “소방안전관리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“시·군·구본부장”을 각각 “시·군·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시·도본부장은”을 “시·도지사는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

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4조제4항”을 “영 제14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조치명령) ① 소방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보완 또는 수리·개조 등이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소방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보완 또는 수리·개조 등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위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관리주체가 재해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기간이 만료되기 5일 전까지 조치명령을 통보한 행정기관에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신청받은 행정기관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 등의 기간 연장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·도본부장과 시·군·구본부장”을 “시·도지사와 시·군·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시·도본

부장 및 시·군·구본부장”을 “시·도지사 및 시·군·구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·도본부장 또는 시·군·구본부장”을 “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“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증”을 “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지정기간”을 “선임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제3항”을 “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”으로, 같은 서식 중 “시행규칙 제3조제4항”을 “시행규칙 제3조제3항”으로, 같은 서식 중 “지정”을 “선임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중 “시·군·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”을 “시·군·구청장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지정”을 “선임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지정일”을 “선임일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시·도(시·군·구) 재난안전대책본부장”을 “시·도지사(시·군·구청장)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의2서식 중 “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”을 “시·군·구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즉시		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현황	구 분		[] 초고층 건축물 [] 지하연계 복합건축물					
	건축물 명칭					준공일		
	건 축 주		성 명			연 락 처		
			주 소					
	대 지 현 황	대지 지번				대지면적 ㎡		
	건축물 현 황	면 적	연면적 ㎡, 건축면적 ㎡			용 도		
		층 수	지상 층, 지하 층			수용인원 명		
		지하역사 명칭				기타 (설계·시공· 감리업체명 등)		
		지하도상가 명칭						
	총괄 재난 관리 자	선임된 사람	인 적 사 항	성 명				생년월일
주 소 (전자우편 주 소)							전화번호 (휴대전화)	
직 위							선임일	
자 격 사 항			자격수첩 번호 및 발급일	제 호,	년	월	일	자격구분
			경 력				선임기간	
해임되 거나 퇴직한 사람		성 명					생년월일	
		주 소					전화번호	
		해임일 또는 퇴직일		년	월	일	☐ 해임 ☐ 퇴직 사유	

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군·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-

신청인 첨부서류	1.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인 경우: 건축사자격증 사본 2.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23조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경우: 소방시설관리사증 사본,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·기계·전기·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인 경우: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.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관리사인 경우: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,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(지정된 총괄재난관리자가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2항제1호(건축사는 제외한다),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제1항제1호(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)·제2호·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 규칙 제2조제2항제3호·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. 다만,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	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	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	건축물 구분	[] 초고층 건축물 [] 지하연계 복합건축물		
	설치등 구분	[] 신축 [] 증축 [] 개축 [] 재축 [] 이전 [] 대수선 [] 용도변경 [] 수용인원 증가		
	건축물 명칭	준공일		
	건축주	성 명	연 락 처	
		주 소		
	대지 현황	대지 지번	대지면적 m²	
	건축물 현 황	면적	연면적 m², 건축면적 m²	용 도
		층수	지상 층, 지하 층	수용인원 명
		지하역사 명칭		
		지하도상가 명칭		
사전재난영향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날	0000. 00. 00.			
재검토 신청 사유				

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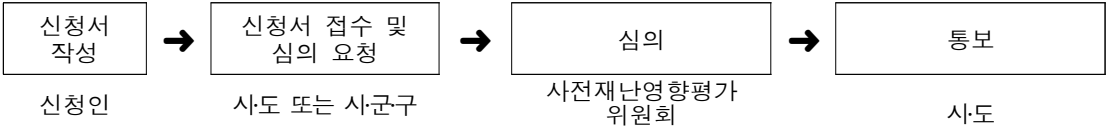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재검토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. 재검토 신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(필요시)
------	--

처 리 절 차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<u>제1조의2(수용인원) ①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항에 따른 사용형태별 재실자 밀도는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별표1의2 제1호나목의 사용형태별 재실자 밀도를 말한다.</u> <u>② 영 제2조제3항단서에 따른 문화·집회용도 중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과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의 수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.</u> <u>1.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은 좌석길이를 45.5센티미터로 나눈 값</u> <u>2.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은 휠체어 공간 수에 고정좌석 수를 더한 값</u>		
<u><신 설></u>		<u>제1조의3(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신청서)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</u>		

제2조(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및

자격) ①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(이하 “초고층 건축물 등”이라 한다)의 유지·관리 및 점검, 보수 등에 관한 사항

2. 방법, 보안, 테러 대비·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(이하 “총괄재난관리자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

1.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

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다.

제2조(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)

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(이하 “초고층 건축물 등”이라 한다)의 유지·관리 및 점검, 보수 등에 관한 사항

2. 방법, 보안, 테러 대비·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3.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

4.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른 건축·기계·전기·토목
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

2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
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
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
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
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
춘 사람

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
건축·기계·전기·토목 또는
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
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
이 5년 이상인 사람

4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
건축·기계·전기·토목 또는
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
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
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

5.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관리
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
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
사람

제3조(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
등록)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
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
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

제3조(총괄재난관리자의 등록)
<삭 제>

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1. 초고층 건축물등을 건축한

경우: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

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

「주택법」 제29조에 따른 사

용검사 등을 받은 날

2.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

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

건축물등이 된 경우: 용도변경

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한

날

3.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하거

나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

매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

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가,

「국세징수법」·「관세법」

또는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

른 압류재산의 매각, 그 밖에

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초

고층 건축물등을 인수한 경우:

양수 또는 인수한 날. 다만, 초

고층 건축물등을 양수 또는

인수한 관리주체가 종전의 총

괄재난관리자를 다시 지정한

경우는 제외한다.

4.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였

거나 총괄재난관리자가 퇴직
한 경우: 해임한 날 또는 퇴직
한 날

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“시·군·구본부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사인 경우: 건축사 자격증 사본
2.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소방시설관리사증 사본,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3.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: 재난 및 안전관

② -----
--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4조의2제3항-----

--- 선임한 -----

---- 선임 등록 -----

----- 시·군·구청장-----

1.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1호--

2.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2호--

3.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3호 --

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4.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: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,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을 받은 시·군·구본부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된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[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1호(건축사는 제외한다),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나목1)(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)·2)·3)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 규칙 제2조제2항제3호·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]을 확인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

4.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5호--

--

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신청을 받은 시·군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[총괄재난관리자가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1호(건축사는 제외한다),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나목1)(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)·2)·3)에 해당하는 경우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·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]을 확인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

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
자 지정 등록 신청을 받은 시·
군·구본부장은 지정된 총괄재
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
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별지 제2호서식의 총괄재난관
리자 지정 등록증을 발급하여야
한다.

⑤ 시·군·구본부장은 제4항
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
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
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
재난관리자 지정 등록대장에 기
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총괄
재난관리자 지정에 관한 내용을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
관(해양경찰청·지방해양경찰
청 및 해양경찰서는 제외하며,
이하 제12조제2항제5호에서
“긴급구조기관”이라 한다) 및
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·도
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

그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
다.

④ 제2항에 -----
-- 선임 등록 신청----- 시·
군·구청장은 선임된 총괄재난
관리자가 영 제14조의2제1항 -

--- 선임 등록증-----

⑤ 시·군·구청장은 제4항에
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
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
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재
난관리자 선임 등록대장에 기록
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총괄재
난관리자 선임에 관한 내용을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
관(해양경찰청·지방해양경찰
청 및 해양경찰서는 제외하며,
이하 제12조제2항제5호에서
“긴급구조기관”이라 한다) 및
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
다.

하 “시·도본부장”이라 한다)에
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) ① 총괄재난관리자는 총괄
재난관리자로 지정된 날부터 6
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
을 포함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
며,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
수교육(補修教育)을 받아야 한
다.

1. ~ 9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4조의2(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
정지)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
군수·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
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
받지 아니하여 법 제12조제4항
에 따라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
때에는 그 사실을 시·도 또는
시·군·구의 공보에 공고하고,
중앙소방학교장에게 통보하여
야 한다.

제5조(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)
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
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
안전점검을 요청하려면 통합안

제4조(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
육) ① -----
----- 선임된 -----

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5조(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)
① -----

전점검을 희망하는 날 30일 전
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초고층
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
전점검 신청서를 시·도본부장
또는 시·군·구본부장에게 제
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
시·도본부장 또는 시·군·구
본부장은 관계 기관과 통합안전
점검 시기 등을 협의하여 신청
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
합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신청인
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시·도본부장
또는 시·군·구본부장으로부터
통합안전점검에 관한 협의를
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통합안전
점검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
시·도본부장 또는 시·군·구
본부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
야 한다.

제6조(교육 및 훈련 등) ①·②
(생략)

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
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
의 종류·내용·시기·횟수 및

----- 시·도지사 또는
시·군·구청장-----
-----.

② -----
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
장-----

-----.

③ ----- 시·도지사 또는
시·군·구청장으로부터 --

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
장에게 -----
-----.

제6조(교육 및 훈련 등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참여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시·군·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시·군·구본부장은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시·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시·도본부장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계획에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화·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과 교육 및 훈련의 내용·시기·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하였을 때에는 교육 및 훈련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·훈련 실시 결

--- 시·군·구청장에게 ----
----- 시·군·구청장은 -----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-----
----- 제출 하여야 한다.

④ -----

소방안전관리상 -----

-----.

⑤ -----

과서를 시·군·구본부장에게 제출하고,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⑥ 시·군·구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·훈련 실시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⑦ 소방청장이나 시·도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⑧ (생략)

제8조(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)
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4조제4항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.

1. 2. (생략)

<신 설>

----- 시·군·구청장-----

-----.

⑥ 시·군·구청장-----

-----.

⑦ ----- 시·도지사는

-----.

⑧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)
영 제14조제4항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2(조치명령) ① 소방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법 제20조의2 제1

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보완 또는 수리·개조 등이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소방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보완 또는 수리·개조 등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위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관리주체가 재해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기간이 만료되기 5일 전까지 조치명령을 통보한 행정기관에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

제11조(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<u>시·도본부장과 시·군·구본부장</u>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1. ~ 7. (생략) 8. 그 밖에 <u>시·도본부장</u> 및 <u>시·군·구본부장</u>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<u>시·도본부장</u> 또는 <u>시·군·구본부장</u>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,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<u>신청받은 행정기관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 등의 기간 연장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 제11조(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<u>시·도지사와 시·군·구청장</u>-----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----- <u>시·도지사</u> 및 <u>시·군·구청장</u>----- ----- ② <u>시·도지사</u> 또는 <u>시·군·구청장</u>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소방청 화재예방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446